

논문심사규정



사단
법인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사)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사)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채택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절차, 심사수당) ① 접수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해당 전공 편집위원을 추천한다.

② 해당 편집위원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세부전공에 적합한 3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③ 논문의 심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편집위원장 및 해당 편집이사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초심은 논문심사위원 2인 이상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게재여부는 초심과 재심의 논문심사위원 중 2인의 게재 가(可) 혹은 부(不) 판정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된다.

④ <삭제 2019. 12. 6>

제3조 (심사위원공개 및 저자공개) 심사위원 및 저자의 성명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사내용 통보)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종합의견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과 저자의 의견교환) 논문 심사 중 필요하면 편집이사의 중재로 심사위원과 저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기간) ① 심사위원은 심사 수락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결과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위원에게 1회 독촉한다. 심사수락 후 20일이 지나도록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편집이사는 다른 심사위원으로 변경한다.

② <삭제 2019. 12. 6>

제8조 (수정논문투고 요청 기한) 해당 편집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총평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수정논문 반송 기한) 내용의 수정 보충 등이 요구된 원고가 총평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0조(게재불가 논문의 재심요구) 최종적으로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의 경우 저자의 재심요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11조 (채택 논문 날짜 기입) 최종적으로 채택된 논문의 경우 원고접수일자, 원고수정일자 및 심사완료일자 등의 진행과정을 투고논문의 저자 아래 위치에 기재한다.

제12조 (심사수당)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사수당 등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